

의안번호	2206711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2.5.
추 계 번호	24D60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0만원, 2031년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00만원(연평균 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위원회 추가 개최 (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일정한 가정하에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제5항 신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제5항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개최 횟수를 2회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정하여 추계함¹⁾
 - (회의 개최 횟수) 최근 5년간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였고, 매년 1회씩 추가로 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함
 - (2020년) 제10회 주택임대차위원회(12.30.)
 - (2021년) 제11회 주택임대차위원회(12.16.)
 - (2022년) 제12회 주택임대차위원회(10.26.)
 - (2023년) 제13회 주택임대차위원회(12.29.)
 - (2024년) 제14회 주택임대차위원회(12.24.)
 - (민간위원 수) 현행과 같이 5명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 참석 수당) 현행 주택임대차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은 1일당 15만원 내(서면심사 10만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어 최대지급액인 20만원으로 가정함

1) 2025년 기준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관련 편성 예산은 200만원이고, 민간위원 수당 외의 비용은 미미하여 기존 예산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1회씩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2027년 100만원, 2031년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500만원으로 예상됨

[표 2]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추가 회의 개최 횟수(a, 회)	1	1	1	1	1	—
민간위원(b, 명)	5	5	5	5	5	—
민간위원 1인당 참석 수당(c, 만원)	20	20	20	20	20	—
합 계(axbxc, 만원)	100	100	100	100	100	5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